

초동수사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식* · 박호정**

요 약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거나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 수사 등이 있다. 현장중심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피해자 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파악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이동경로를 추적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동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수사기법의 개발과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The Reinforcement Measures of First Investigation Capability

Park Hyung Sik* · Park Ho Jeong**

ABSTRACT

First investigation is urgent investigation activities to arrest and to obtain evidence at the beginning of the incident. If the first investigation is wrong, the crime will not be solved or a lot of evidence will be disappeared. Therefore, if the first investigation is wrong, Wasting a lot of manpower and budget, or the other victims are to occur. First investigation is the crime scene centered investigation, victim centered investigation and damaged goods centered investigation. The crime scene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n the discovery of dropped objects, to confirm the date of offense, on the discovery of witnesses. Victim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f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family, fellowship and home interior matter. Damaged goods centered investigation is the investigation on the place of crime damaged goods and the movement route of crime damaged goods. In order to reinforce the investigative capacity of police first investigation, It is needed to reinforce the education on the first investigation, to conduct continuously for FTX (field training), to product the manual for first investigation, to build a case analysis system, to develop of forensic techniques and the coordination of national. The police should be giving people faith from the first investigation.

Key words : first investigation, urgent police disposition, crime scene, victims, Damaged goods

접수일(2014년 10월 6일), 게재확정일(2014년 10월 15일)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주저자)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교신저자)

1. 서 론

2014년 4월 16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되어 탑승인원 476명 중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 검찰은 이 사고의 책임자인 청해진해운(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유병언에 대하여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유병언은 구속전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에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자를 검거하기 위해 4월21일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래 검사 15명을 포함한 110여명을 투입했다. 또 경찰 2600여명과 해경 2100여명이 검거작전에 동원됐고 해경 함정 60여척도 해상 검문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5월 26일, 검찰이 전남 순천 송치재 ‘숲속의 추억’ 별장을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하고도, 통나무 벽안에 은신해 있던 유병언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경찰은 주민의 신고로 2014년 6월 12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매실 밭에서 부패된 남성의 시신을 한 구 발견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번사체가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로 훼손된 상태였기에, 시신을 무연고자로 보고 신원 확인을 위해 영덩이뼈 일부를 떼어내 DNA 분석만을 의뢰했다. 그리고 경찰은 40여일이 지난 7월21일, 번사체와 유병언의 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야 이 사체가 유병언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경찰은 이 시신의 머리카락과 뼈 등 증거물을 완전히 수거하지 않고 40여 일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유가 시신이 고가의 점퍼와 구두를 착용하고 있었고, 유 전 회장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류품이 함께 발견됐지만 노숙자의 단순 번사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시신이 유씨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순 번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즉각적인 정밀 부검을 하지 않았고, 시신은 한 달 넘게 순천장례식장 냉동실에 보관됐다. 경찰이 시신을 처음에 발견했을 당시, 제대로 된 신체 특징과 지문 확인을 했더라면 유 씨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지만, 유류품과 시신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아 엄청난 수사력을 낭비한 꼴이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의

DNA확인이 있을 후,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유류품을 재조사하였다. 사체 발견 당시 스쿠알렌 1개, 막걸리 빈 병 1개, 소주 빈 병 2개, 천으로 된 가방, 직사각형 돋보기 1개가 있었다. 그리고 상의 점퍼는 고가의 이태리제 ‘로로피아나’ 제품으로 확인됐고, 신발도 ‘와시바’라는 고가의 명품으로 밝혀졌다. 스쿠알렌 병의 제조사는 구원과 계열사인 한국제약이었다. 아울러 시신 주변에 있던 가방에는 유병언이 지난 2009년 작성한 설교집의 제목 ‘꿈같은 사랑’과 구원파가 발간하는 월간지 이름인 ‘글 사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애초 제대로 수사했다면 40일 동안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여기에 발견 현장에 시신 머리카락과 지팡이 등 주요 증거물을 흘리고 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초동수사의 부실문제가 더 커졌다. [1]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연인원 145만 여명과 해경, 군대까지 동원하는 등 엄청난 국가예산과 인력을 낭비한 후였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하여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고, 나아가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유병언 사망의 진위여부 및 자·타살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으로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사건이 영원히 미궁에 빠져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잘못을 깨닫고서 사건을 다시 수사하려고 해도 이미 많은 증거가 사라져버린 경우가 무수히 많다. 설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제적 진실을 밝혀 범인을 검거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경찰의 초동수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야기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초동수사란 넓은 의미에서는 처음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활동 그리고 범죄현장의 보존,

범인의 도주로를 차단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긴급배치 등의 초동조치와 그 이후의 좁은 의미에서의 초동수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초동수사는 범죄현장을 중심으로 한 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 그리고 피해품 중심수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2.1 초동수사의 개념

초동수사란 사건발생의 초기에 범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한 수사 활동을 말한다. 범인은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현장에서 벗어 나려고하기 때문에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부근에서 검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범인이 현장을 벗어나고 나면 피해자나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의 인적증거를 확보하여 생생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범죄현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이 되고, 현장에 남아있는 물적 증거들은 흩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적 증거 및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현장중심의 초동수사가 사건해결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2.2 초동수사의 방법

2.2.1 초동조치

초동조치는 신고접수에서부터 현장출동, 현장보존, 긴급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고접수는 발생일시, 장소, 피해상황, 범인의 인상착의, 도주경로 등에 대하여 청취하는 것이다. 신고 접수시에는 접수자의 관할이 아니더라도 일단 접수 후에 관할경찰서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단 사건을 접수하면 공조수사를 위하여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보는 상세한 것을 듣기 전에 “00에서 00사건 발생” 정도로 신속히 보고하고, 제2보에서는 피해상황, 범인의 추적상황, 수배를 요하는 사항 등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해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압하고, 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현장의 상태를 발생 당시 그대로 보존하되 범위를 실행한 지점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지역에는 경찰 통제선을 설정하

여 로프를 치거나, 표찰 기타의 표시를 하여 현장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범인이 범죄현장을 벗어난지 오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배치하여 도주로를 차단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범인을 체포하여야 할 것이다.

2.2.2 협의의 초동수사

범인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면, 본격적인 계속수사를 대비하여 현장중심수사, 피해자중심수사, 피해품 중심수사 등의 초동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2.1 현장 중심수사

현장중심수사는 증거의 보고인 범죄현장주변에서 유류품의 발견, 범행일시의 확정, 참고인의 발견, 지리감 등을 파악하는 수사 활동이다. 현장중심수사에는 탐문수사, 감식수사, 유류품수사, 수법수사, CCTV수사 등이 있다. 탐문수사는 범인이외의 제3자로부터 범죄에 대하여 견문 또는 체험한 사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것이다. 감식수사는 범죄현장에 각종 과학적 지식과 기술, 기구를 통하여 지문, 족적, 유전자 등을 찾아내어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유류품수사는 범죄현장 및 부근에 남겨져 있는 범인의 흉기, 착의 등 유류품에 대하여 출처를 추적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방법이다. 수법수사란 범죄수법의 반복성·습관성에 착안하여, 범죄 행위시에 나타난 수법유형을 분석·수집·대조함으로써 범인·여죄·장물을 발견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활동이다. CCTV수사는 범죄현장주변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면을 분석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기법이다.

2.2.2.2 피해자 중심수사

피해자중심수사는 “왜 피해자가 피해의 당사자가 되었을까?”라는 점에 착안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 및 가족의 생활상태, 재산상태, 교우관계, 가정 내부사정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2.2.2.3 피해품 중심수사

피해품 중심수사는 범죄피해품의 소재·이동경로를 추적하여, 그 보관자 또는 소지자를 발견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방법이다. 피해품 중심수사에는 장물수사, 수표추적수사, 현금인출기수사, 신용카드사용내역추적수사 등이 있다. 장물수사는 범죄의 피해품을 확정하고, 장물의 종류·특징 등을 파악하여, 그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방법이다. 피해품을 찾기 위하여 장물수배, 임검조사, 장물수배서의 발행 등을 통하여 장물 및 범인을 발견하는 수사 활동이다. 수표추적수사는 범죄현장에서 도난당한 수표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기법이고, 현금인출기수사는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현금인출기에 찍힌 범인의 사진을 분석하여 범인을 검거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용내역수사는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 시간, 목격자 등을 찾아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이다.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간부가 현장에 임장하여 검시를 하고 범죄혐의점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의 검시는 의학적으로 사체상태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순천경찰서에서는 너무나도 어이없게 변사사건을 처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체 주변에 널려진 입고 있는 의류, 신발, 책자, 스쿠알렌 등 소지품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식이 있었어야 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모든 눈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 관내에서 진행 중이고, 수배자가 도주한 장소부근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이라면 당연히 대조를 해보아야 했을 것이다. 변사사건의 초동수사만 잘했어도 검찰과 경찰이 연인원 145만 여명과 해경, 군대까지 동원하는 등 엄청난 국가예산과 인력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초동수사인 현장중심수사 중에서 유류품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초동수사의 문제점 사례 분석

3.1 유병언변사사건(예산과 인력을 낭비한 사례)

3.1.1 개요

경찰은 2014.6.12.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로부터 2.3km 떨어진 곳에서 유병언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유병언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2] 경찰이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에 제대로 된 신체 특징과 지문 확인을 했더라면 유병언이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류품과 시신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국과수에서는 시신 뼈에서 추출한 DNA가 유병언과 일치하고, 시신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서 채취한 지문이 유병언의 지문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치아 상태와 유병언의 큰형 유병일의 DNA 대조 등을 통해 시신과 유 씨가 같은 인물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찰은 장남 유대균의 구강세포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유병언의 시신과 부자관계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3.1.2 문제점 분석

3.2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추가적인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례)

3.2.1 개요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1년 가까이 살인 행각을 벌이면서 경찰을 비웃었다. 2003년 9월 24일 강남구 신사동 명예교수 이모씨(73)부부 살인사건의 경우, 부부모두를 쇠망치로 때려 두개골이 함몰되어 사망하였다. 장롱 안에 있던 폐물과 현금 280만원은 손도 대지 않았다. 그리고 2003.10.9. 종로구 구기동에서도 할머니와 며느리, 아들 3명을 둔기로 때려 머리가 함몰되어 사망케 하였다. 2003.10.16. 강남구 삼성동에서도 피해자를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사망케 하였다. 2003.10.18. 종로구 혜화동에서도 2명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였다. 그런데 위 4건 모두 금품은 손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언론에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보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이후에도 유영철은 수법을 바꿔 전화방도우미 및 마사지사 등을 살해하는 총21명을 살해하였다.

3.2.2 문제점 분석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국민들을 온통 불안에 빠지게 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 대응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1명이나 되는 피해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첫째 망치로 머리를 때려 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품이 없다는 것은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연쇄살인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동수사의 기본인 범죄수법에 대한 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사건에 대한 공조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셋째, 기존의 원한관계나 치정, 강도목적의 살인과는 전혀 다른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연쇄살인과 같은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유영철사건도 초기에 범행 현장이나 범행수법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하였다면 추가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초동수사 중에서 수법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3 대전국민은행 강도사건(미궁에 빠진 사례)

3.3.1 개요

2001.12.21.10:00경 국민은행 둔산동 지점 지하 층에서 불상자 2명이 권총을 쏘면서 3억 원이 든 현금 호송가방을 강취하여 도주하였다. 범인 중 1명이 저항하는 호송요원에게 권총 2발을 발사하여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범인들은 범행 장소에서 400m 떨어진 곳에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차량으로 바꿔 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에서는 112신고를 받고 파출소순찰차, 형사기동대차 등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타격대는 출동대기토록 지시하였다. 이 후 전담반·특별수사반 운영 등 연 수사 인력 10,000여 명을 투입하여, 다각도로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3.3.2 문제점 분석

국민은행 강도사건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우선 순찰차가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으나, 용의차량의 번호를 파악해서 신속히 전파해야 함에도 27분이나 지나서 보고하여 수배가 늦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범인들이 무사히 도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긴급배치가 사건 발생 후 70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져 전혀 효과가 없었다. 셋째, 수사지휘체계가 미흡하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간부가 직접 지휘하여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건 발생 후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지휘가 이루어졌다. 한 마디로 총체적인 초동수사의 부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초동수사 중에서 보고 및 전파, 수사긴급배치 등 초종조치가 미흡하여 영구히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3]

4. 초동수사역량 강화방안

경찰의 초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초동수사에 대한 교육의 강화되어야 한다. 초동수사는 사건해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몇 십 년씩 경찰에 근무한 사람도 막상 초동수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동수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초동수사에 대한 FTX(현장훈련)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의 업무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황이 발생시에 훈련받은 대로 거의 반사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초동수사 매뉴얼의 제작이다. 납치·유괴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생명이 시간을 다투는 사건은 갑자기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그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사건분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경찰의 수사역량은 어느 나라보다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건분석시스템이다. 이는 지방청이나 경찰청단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단 중요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과장이나 계장, 팀장들은 상부에 보고하랴 수사 지휘하랴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전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다

첫째, 과학수사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범죄는 하루가 다르게 신종수법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기법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각자의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민의 협조이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신속히 출동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신속히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평상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든 신체든 재산이든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 허둥지둥 댈 것이 아니라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반드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수사행태를 보면 발생사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추리나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용의자수사나 망원에 의한 첩보수사에 치우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부터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경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박재명, “자살...자연사...타살...의혹눈덩이”, 주간동아, p.11, 2014.
- [2] 유병언 시신 40일 전 발견...미흡한 초동수사 '순천서장 경질'<http://pop.heraldcorp.com/>
- [3] 최영철, “‘헛다리’초동수사 대형 피해 불러”, 주간동아, pp.18~20, 2004.
- [4] 조선호, “초동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범인검거방안에 대한 연구,公安행정학회보, 제21호, pp.390~392, 2005.

[저자소개]



박형식 (Hyungl-Sik Park)

1985년 4월 경찰대학교 행정학 학사
2001년 2월 경희대학교 행정학 석사
2007년 8월 광운대학교 행정학 박사
2008년~현재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mail : k62711@naver.com



박호정 (Park Ho Jeong)

1990년 경찰대학교 행정학사
2004년 충남대학교 법학석사
2013년 충남대학교 법학박사
2013년 3월 ~ 현재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email : phj1041@hanmail.net